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중 소 기 업 인 력 지 원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3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상, 평가항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제척·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기준 정비(안 제17조의2)

- 1) 현행 평가기준에 기업의 고용 창출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절차 등 규정(안 제23조 신설)

- 1) 평가대상은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으로 함

- 2) 평가항목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일자리 증감,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일자리 질을 평가함
- 3) 평가절차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에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정보 등을 등록하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안 제30조의3, 제30조의5)

- 1)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2년)만을 규정하던 것을 연임할 수 없도록 함
- 2) 성과보상기금 운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안전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수인력 및 잠재인력 채용을 통한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 및 성과에 관한 사항

4.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에 관한 사항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하 “지원사업 참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사업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3. 사업 규모, 참여기업 선정방식, 평가결과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일자리의 증감

2.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4.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등 인적
자원의 개발·활용

5. 그 밖에 평가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기본정보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된 시스
템을 말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평가결
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
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연임할 수 없다”로 한다.

제30조의5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또는 연구를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우수인력 및 잠재인력 채용을 통한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 및 성과에 관한 사항</u>
<u><신설></u>	4. <u>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에 관한 사항</u>
3.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23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하 “지원사업 참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사업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3. 사업 규모, 참여기업 선정방식, 평가결과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일자리의 증감

2.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4.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 중심의 인사관
리 등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5. 그 밖에 평가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지원사업 및 지원사
업 참여기업의 기본정보를 중소
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중소
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
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된 시스템을 말한
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평가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
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
당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
내의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일자
리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신설>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호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신 설>

<신 설>

<신 설>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또는
연구를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임직
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고 있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
문,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 기피(忌
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
용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
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 제7항-----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443